

만일의 배상사고에 대한 준비와 입주보증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편안하고 충실한 유학생활을 보내기 위해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학생주택종합보상

(해외여행보험 + 보증인보상기금)

일본에서 민간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이 이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증인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증인부탁이 보다 수월해질수 있습니다.

(운영단체) 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사업부 사업부 보험·보상과
〒153-8503 東京都目黒区駒場4-5-29 TEL : 03-5454-5275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유학생을 위한 안내 영상(다언어)]를 봐주십시오.

1.보상대상자

○보증인보상기금: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

유학생이 민간숙소에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을 선 기관, 개인

- ①대학등의 교직원, 유학생센터장, 유학생과장등
- ②지역의 국제교류협회, 센터등

단지, 전수학교과정 (전문학교) 및 일본어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유학생에 대한 보증인의 범위는 학교 및 교장, 주임교원, 사무장에 제한되어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유학생

유학생주택종합보상협력학교인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 및 법무대신의 고지에 정한 일본교육기관에 입학한 자 및 입학이 확실한 자로, 원칙상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2.보상기간

〈신규가입〉	①가 입 수 속 을 한 다음 날 (주해1) ②임대차계약개시일	} ①②중, 늦은 쪽 날의 오전0시부터	1년후의 시작일전날의 오후12시까지 혹은
〈계속가입〉	③원보상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주해2)		오전0시부터

(주해1) 유학생이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보험료등 부담금을 입금하고 학교로부터 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다음날

(주해2) 유학생주택종합보상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자가 보상기간만료 전에 계속을 위해 가입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보 상 기 간	1년간	2년간
○보상기간에 보상개시일	2012년3월1일 오전0시	2012년3월1일 오전0시
보상종료일	2013년2월28일 오후12시	2014년2월28일 오후12시

*상기 보상기간 만료 후, 2,000엔(가입금 750엔+보험료 1,250엔)으로 계속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면 학교를 통해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신청하십시오.

*남은 재류기간이 1년 이내이면 「1년간」, 1년을 초과하면 재류기간에 따라 「1년간」 + 「6개월 연장」 또는 「2년간」 으로 가입하십시오.

*유학 의 재류자격으로 인하여 재류자격이 끝날 경우 (졸업 또는 퇴학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재적하고있지 않을 경우), 보상은 끝나기때문에 해약수속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3. 유학생주택종합보상의 내용

○보증인보상기금: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보증인보상

【보증인보상기금】

어떤 이유로 인해 임대주에게 집세를 연기하여 납부하게 되거나, 혹은 임차한 주택의 수리, 또는 원상으로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그 비용을 연대보증인이 대납해야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주해) 「보상기간중에 명도」 하게 되는 경우만 속합니다.

○해외여행보험: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계약자가 되어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와 포괄협약을 체결한 보험입니다.

배상책임

【유학생배상책임】

유학생본인이 보상기간중, 일상생활에서 기인하는 사고 또는 유학을 위한 숙박·주거시설의 소유·사용, 혹은 관리로 인한 사고때문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품을 훼손하는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보상한도액범위내의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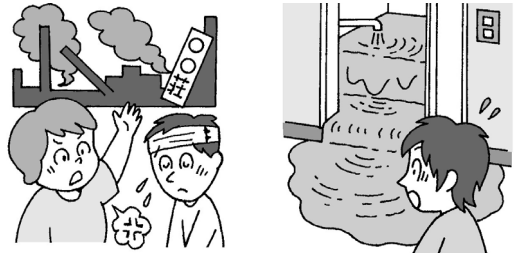
*다음의 물품을 포함합니다.

- 렌트업체로부터 피보험자 (유학생본인) 가 직접 임대한 여행용품 또는 생활용품
- 호텔객실 또는 객실내의 동산 (금고열쇠, 방열쇠를 포함합니다.)
- 숙박, 주거시설 (단지, 화재폭발, 파열 및 물이 새는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만 속합니다.)

*피보험자는 유학생본인만 속합니다. 아이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 경우나, 임차한 거실의 훼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하는 경우에 친권자 등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보상대상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고가 보상대상으로 됩니다.

- 실화로 인해 임차한 주택이 타버렸다.
- 가스폭발사고로 인해 임차한 주택이 파손되고 말았다.
- 아파트가 물에 잠겼다.
- 매장상품을 훼손했다
- 자전거운전중, 행인과 부딪혀 부상을 입혔다.



(주해) 주택에 끼친 손해로 보험금이 지불되는 것은, 화재, 폭발, 파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한 물이 새는 것이 원인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예를 들어, 우연히 물건에 부딪혀 마루에 흠집이 생긴 경우,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등이 원인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상해후유장애

유학생본인이 보상기간중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고당일부터 (사고당일을 포함) 180일 이내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3-100%의 후유장애보험금액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대상으로 됩니다.

-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 스포츠를 하고 있을 때 입은 부상으로 의한 후유장애
- 여행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 집안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등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보험금의 지불액,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주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후기 「보상내용」 (5페이지) 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보험료등 부담금과 보상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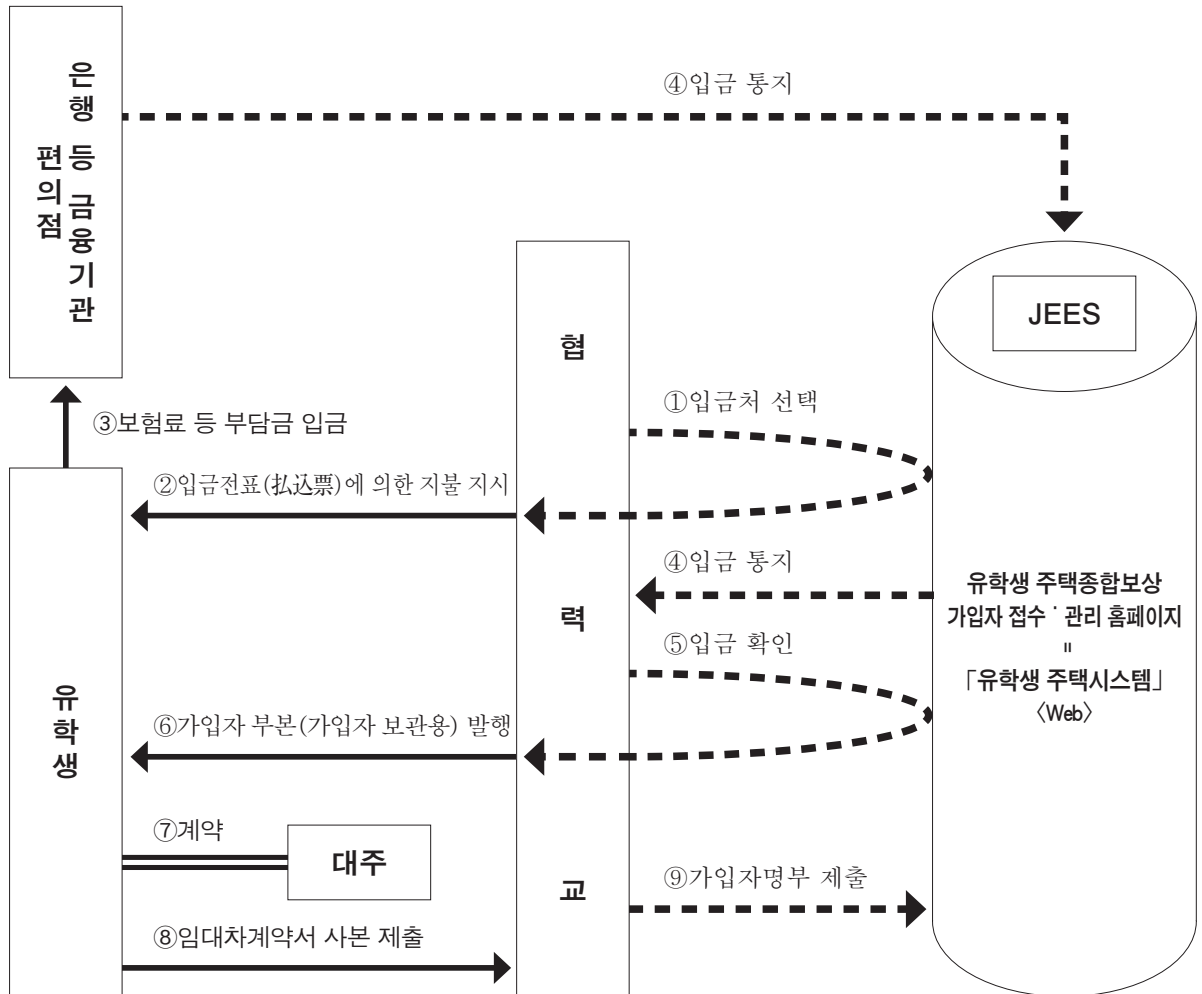
구분	보상대상자	보상내용	보상기간 1년간	보상기간 2년간
해외여행보험	유학생	①유학생배상책임	5,000만엔한도	5,000만엔한도
		②상해후유장애	240만엔한도	240만엔한도
보증인보상기금	보증인	③보증인보상	30만엔한도	30만엔한도
보험료등 부담금 (해외여행보험보험료와 보증인보상기금가입금의 합계)			4,000엔 (보험료2,500엔+가입금1,500엔)	8,000엔 (보험료5,000엔+가입금3,000엔)

5. 신청방법

민간 아파트 등에 입주 시,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의 수속절차에 따라 신청하십시오.

■예) 부동산소개업소 방문부터 입주까지

- (1) 부동산소개업소 등을 통한 물건 내정
 (계약시, 부동산소개업소 등으로부터 보증인과 보험가입의 요구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 (2) 학교 유학생 담당창구에서 보증인과 보험가입에 대해 상담
 (제도 가입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3) 신청수속
 (①~⑨의 순서로 신청합니다.)



(주) 상기 파선 → ← → ← 은 시스템 경유의 수속을 의미합니다.

***유학생은 ③, ⑦, ⑧이 필요합니다.**

- (4) 연대보증인에게 의뢰
 ①보증인에게 부분(가입자 보관용)을 전달하고, 유학생 주택종합보상의 가입 사실을 알립니다.
 ②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5) 부동산소개업소 등을 통한 계약
 (부분(가입자 보관용)을 제시하고 부동산소개업소 등에 보험가입 사실을 알립니다.)
- (6) 학교 유학생 담당창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7) 입주
 ※이사 후, 보증인이 불필요하거나 보증인이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유학생 담당창구에 알려주십시오.
- (8)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가 「유학생 주택종합보상 가입자명부」를 유학생 주택시스템을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 교육지원협회(JEES)에 제출합니다.

6. 가입시의 주의점

① 가입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입시에는 가입의뢰서 겸 지불취급표의 기재사항이 옳은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보험금을 지불할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령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금을 지불할수없는 때가 있습니다.

- 보상기간중, 핏켈등 등산도구를 사용하는 산악등반, 루지, 봅슬레이, 스킨레톤,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탑승, 초경량동력기 (모터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을 말하며, 패러플레이팅 등의 낙하산형 초경량동력기를 제외합니다.) 탑승, 자이로플레이팅탑승,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경우
- 보상기간중에 항공조종을 하는 경우 (하지만 업무상의 항공기조종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 보상기간 중에 자동차 등 승용도구를 이용하는 경기, 시운전, 경기장에서의 자유 주행 등을 하는 경우
- 보상기간 중에 위험한 업무 (예를 들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 에 종사하는 경우

② 보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 가입할때 여권제출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귀국예정인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보험기간의 연장신청은 받아들일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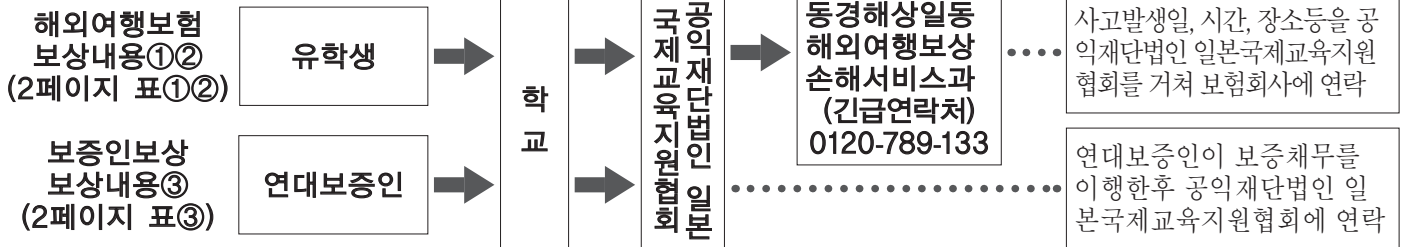
③ 귀국예정인 분이거나 일본의 영주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에 주주상황등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④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했을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인수보험회사가 파산했을때에는 보험금, 환불금등의 지불이 일시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될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이 파산했을때 이 보험은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보상대상으로 되어 보험금, 환불금등은 원칙상 80% (파산보험회사의 지불정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때까지 이 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100%) 까지 보상할수 있습니다.

⑤ 계약내용 및 사고보고내용의 확인에 대해서:손해보험회사간에는 상해보험등에 대하여 부정계약으로 인한 사고유발을 미리 방지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적당히, 신속히, 확실하게 지불하기 위해 계약체결 및 사고발생시 동일피보험자 혹은 동일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상황이나 보험금청구상황은 (사)일본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계약정보등에 의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내용은 상기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의문점은 인수보험회사에 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7. 사고발생시의 대처



!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① **사고통지:**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사고일, 시간, 장소, 피해자이름, 사고상황 등을 30일 이내에 학교를 경유해서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배상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협상을 하는 「합의협상서비스」 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담당부서의 조언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되는 분)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승인없이 합의했을 경우, 합의금전부 혹은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 학생이 일본어로 의사거래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보험회사와의 창구는 반드시 학교가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 가입후의 주의점

① **통지의무 (가입후,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했을 · 보험회사로 연락해야 할 의무):** 가입후, 계약내용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에는 반드시 학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또는 인수보험회사에게 통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지가 없는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상기간 중에 위험한 업무 (예를 들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 에 종사하게 된 경우

② 퇴학, 출국으로 인하여 해약하는 경우, 학교 또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통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기타 주의점

본 팸플렛은 해외여행보험 보증인보상기금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때에는 반드시 「중요사항설명」 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약자 혹은 인수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협력학교에 재직하고있는 유학생이며 보증인보상기금에 가입하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보험포괄협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하는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권리등은 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게 속합니다.

<문의처>

<계약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사업부 보험·보상과
 우편번호153-8503 東京都目黒区駒場4-5-29
 TEL : 03-5454-5275
 FAX : 03-5454-5232
<http://www.jees.or.jp/>

<인수보험회사>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
공무제2부 공무제1과
 우편번호102-8014 東京都千代田区三番町6-4
 TEL : 03-3515-4133
 FAX : 03-3515-4132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

■ 보증인보상기금(보상의 개략)

보상금을 급부하는 경우	보상금을 급부하지 않는 경우
<p>임차인인 유학생이 임대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행되지 않아 보증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불합니다.</p> <p>(1)집세 또는 임대료 및 관리비지불 (2)셋집등의 수리 혹은 원상복구 비용의 납부</p> <p>(주해) 「보상기간중에 명도」 하게되는 경우만 속합니다.</p>	<p>아래에 제출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p> <p>(1)임차인에 해당하는 유학생이 임대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다음에 나열된 손해 가. 수도광열비 나. 반상회비 다. 기타,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불할 의무가 없는 책임이행에 의한 손해</p> <p>(2)보증인, 임대인 혹은 이분들의 대리인의 고의적인,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p> <p>(3)집세등의 공정\supset타당하지 못한 인상, 환경악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불이행에 의한 손해</p> <p>(4)보상기간이 개시되었을때, 집세등의 지불연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끼친 손해</p> <p>(5)보상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도 보상금을 확정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혹은 임대차계약의 보증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p> <p>(6) 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주(貸主), 연대보증인, 협력교의 등의 없이 임차인을 변경 또는 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p> <p>(7)보증인보상기금을 신청할 시기, 유학생, 보증인 또는 이분들의 대리인에게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p>

■ 해외여행보험(보상의 개략)

보상항목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지불하는 보험금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주요한 경우
유학생 배상책임 위험	<p>피보험자 (보험대상으로 되는 분=유학생 본인) 이 보상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기인하는 사고 또는 주택(*1)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 때문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품(*2)에 손해를 입히는 등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p> <p>(*1) 주택이란?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 의 유학 또는 여행을 위한 숙박시설 혹은 주거시설을 말합니다.</p> <p>(*2) 렌트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임대한 여행용품·생활용품, 숙박시설의 객실, 숙박시설의 객실내의 동산 (금고열쇠를 포함합니다.), 주거시설 (실내의 동산을 포함합니다.) (*3)을 포함합니다.</p> <p>(*3) 주거시설의 손해 중에서 다음의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 폭발, 파열 및 누수, 방수 또는 물이 새는 것에 의해 끼친 손해만이 지불 대상이 됩니다. · 건물 또는 맨션의 전체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실내 (실내의 동산을 포함합니다.) 의 손해 · 방 이외의 손해</p>	<p>손해배상 금액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유학생 배상책임보험금액이 한도가 됩니다.</p> <p>(주1)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인수보험회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p> <p>(주2)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유익한 비용, 인수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주3) 피보험자가 책임무감당자인 경우, 그 책임무감당자의 행위로 인해 친권자 등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도 지불 대상이 됩니다.</p>	<p>예를 들면, ①전쟁, 기타 변란 (*4) ②방사선 조사, 방사능오염 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고의 ④직무수행, 또는 아르바이트업무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업무상의 배상책임) ⑤항공기, 선박(*5), 차량(*6) 총기의 소유·사용·관리로 기인하는 배상책임 ⑥수탁품에 관한 배상책임((*)2)에서 포함되는 물건은 지불 대상이 됩니다.) ⑦친족에 대한 배상책임</p> <p>(*4) 전쟁위기 등 면책에 관한 일부 수정 특약이 세트 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행위는 지불 대상이 됩니다.</p> <p>(*5) 요트, 수상오토바이는 보험금의 지불 대상이 됩니다.</p> <p>(*6) 렌터카를 포함합니다. 또한 자전거, 골프장의 카트, 레저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스노모빌 등은 보험금의 지불 대상이 됩니다.</p>
상 해 후유장애 보험금	<p>피보험자 (보험대상으로 되는 분=유학생 본인) 가 보상기간중 급격하면서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신체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p>	<p>(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액의 3%~100% 지불액은, 보험기간을 통한 합계로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액이 한도가 됩니다.</p>	<p>예를 들면,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보험금 수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전쟁, 기타 변란 (*7) ④방사선조사, 방사능오염 ⑤무면허·만취·마약복용상태로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⑥싸움이나 자살, 범죄행위 ⑦뇌질환, 심신상실, 임신, 출산, 조산, 유산으로 인한 부상 ⑧여행개시 전 혹은 여행이 끝난 후에 발생한 부상</p> <p>(*7)전쟁위기 등 면책에 관한 일부 수정 특약이 세트 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행위는 지불 대상이 됩니다.</p>

계약개요주의환기정보에 대한 설명

- 계약개요는 가입하실 보험의 상품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 특히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것입니다. 가입하기전에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환기정보는 보험가입신청을 받을때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등, 특히 주의해야 할 정보를 기재한것입니다. 가입하기전에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가입하실 보험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한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자 단체대표자에게 보내드린 보험약관에 적혀있습니다. 의문점등이 있으면 이 팸플렛 4페이지에 기재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 팸플렛 및 가입자 보관용 등, 가입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관하십시오.

계약개요설명

1. 상품구조 및 인수조건등

(1) 상품구조

이 보험은 재단법공익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협력학교에 재적하는 유학생이며 보증인보상기금에 가입한 유학생을 피보험자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 로 하는 포괄협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하는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권리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 보험의 명칭, 계약자로 되는 단체,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등에 대해서는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내용주의환기기간 (보험계약기간)

①주요한 지불사유 (보험금을 지불하는 주요한 경우), 보험금의 지불액, ②주요한 면책사유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주요한 경우), ③보험기간 (보상기간) 등에 대해서는 1페이지, 2페이지,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인수조건 (보험금액등)

이 보험의 인수조건 (보험금액 등) 은 사전에 정해지 계약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코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 보험료주의환기납부방법

보험료는 가입하는 계약코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 · 보험료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페이지,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3. 만기환급금주의환기계약자배당금

이 보험에는 만기환급금 · 계약자배당금은 없습니다.

주의환기정보에 대한 설명

1. 고지의무주의환기통지의무등

(1) 가입시의 주의사항 (가입의퇴서기재상의 주의사항등)

- 보험제도는 다수의 사람이 서로 보험료를 내어 호상기간에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험금등을 지불하는 위험도가 높은 분이 무조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평성을 잃게 됩니다.
- 때문에 가입시, 인수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통보할 의무 (고지의무) 가 있습니다. (인수보험회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있습니다.) 고지 의무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팸플렛 등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만약, 고의적인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라면 인수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 명의로 가입을 해약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을 해약한 경우는 비록 보험금을 지불하는 사유가 발생한다 해도 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 「보험금지불사유의 발생」과 「해약의 원인으로 된 사실」 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불의 대상이 됩니다.
- 또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이외에도 계약체결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가 곤란한 질환 · 증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등, 고지의무 위반내용이 특히 중대한 경우,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보험금지불을 보험금지불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2) 가입후의 유의사항(통지의무등)

보상기간 중에 위험한 업무 (예를 들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 에 종사하게 된 경우의 통지의무와의 통지의무와 사고가 발생했을때의 수속절차등에 대해서는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연락이나 수속이 등이 없으면 가입을 해제하거나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다음번의 계약갱신인수

보험금청구상황등에 따라서는 이후의 보험갱신이 거절되거나 인수조건을 제한할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2. 책임개시기

보험책임은 원칙적으로 1페이지에 기재한 보험기간 (보상기간) 개시기부터 시작합니다.

3. 주요면책사유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되었을때의 취급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되었을때에는 보험금, 환급금등의 지불이 일시적으로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5. 개인정보취급에 대해서

7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에 대해서」 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6.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현재의 가입을 해약, 감액하는것을 전제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검토할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①현재의 가입을 해약, 감액하는 경우의 불리한 점

○대부분의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다 적은 액수로 됩니다. 특히, 가입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약하게 될때의 환급금은 전혀 없던지 아니면 극히 적은 액수로 될수도 있습니다.

②새로 보험계약에 가입하게될 경우의 주의점

○새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고지할때,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게 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가입이 해약되고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전의 사고등은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7. 피보험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한 해약

피보험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그 피보험자에 관한 가입을 해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및 수속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팜플렛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8. 보험금의 청구·지불에 대하여

(1)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수속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수속 등에 대해서는 팜플렛 등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의 청구에 있어서는, 약관에 정해진 서류 이외에, 이하의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증명서, 사고발생 장소 관리자의 사고 증명서 등 사고의 발생 또는 사고 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거
- 주민표, 호적등본 등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의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또는 증거
- 워트겐·MRI 등의 상해 또는 질병의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거
- 영수증 등의 피해가 발생한 물건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가 발생한 물건의 사진 및 견적서 등의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
- 기타 보험계약 등의 보험금 지불 내용을 기재한 지불내역서 등.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서류 또는 증거

(3) 대리인으로부터의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보험금의 지불을 받아야 하는 피보험자가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 가족 분들 중에서 인수보험회사의 소정의 조건을 채우는 분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팜플렛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배상책임 보험금 등의 지불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비용보험금을 제외한, 다음의 ①에서 ③까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손해배상으로 변제를 실시한 경우
- ②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불을 승낙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③피보험자의 지시에 의거하여 인수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인 기업 또는 단체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에게 본 가입의뢰서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및 동경해상그룹 각 회사는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 (과거에 취득한것을 포함합니다.) 를 보험인수판단, 본 계약의 관리·이행, 부대서비스 제공, 기타 보험·금융상품등의 각종 상품·서비스의 안내·제공, 앙케이트등을 진행하기 위해 이용하는이외에 아래①부터⑤까지의 경우에 이용·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등의 특별한 비공개정보 (민감정보) 의 이용목적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의해 업무의 적절한 운영확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 ①본 계약과 관련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업무위탁처 (보험대리점을 포함), 보험중개인, 의료기관, 보험금의 청구, 지불에 관한 관계기관, 금융기관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함
- ②계약체결,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금지불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른 손해보험회사, 동경해상그룹내부의 다른 보험회사, 사단법인일본손해보험협회등과 공동으로 이용함
- ③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과 동경해상그룹 각 회사간 또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과 그 회사의 제휴기업등사이에 상품·서비스등의 제공·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
- ④재보험인수회사등에서 재보험계약의 체결, 갱신·유지·관리, 재보험금지불등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재보험인수회사에 제공함
- ⑤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소유권유보등의 담보권자의 담보권설정·변경·이전등과 관련된 사무적인 수속, 담보권의 유지·관리·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그 담보권자에게 제공함

*「동경해상그룹」이란,「동경해상홀딩스주식회사」산하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일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경해상일동인신생명보험주식회사, 동경해상일동피년설생명보험주식회사 등이나, 앞에 기재한 각 회사의 자회사 등을 포함합니다.

동경해상그룹 각사의 범위 및 제휴처 기업 등의 일람, 동경해상그룹 내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관리책임자,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일람,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및 동경해상그룹 각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경해상일동화재주식회사

보험에 관한 의견 ▷ 상담은 : 4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문의처에서 접수합니다.

사고의 연락 ▷ 상담은 : 동경해상일동안심110번 **0120-119-110** “사고는 119번-110번” (사고접수센터)
(접수시간 : 365일24시간) 휴대폰, 차량전화, PHS, 위성전화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동경해상일동화재주식회사 해외여행보험 손해보험서비스과

긴급한 경우에는 : 4페이지에 기재된 [긴급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20-789-133

(사)일본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손해보험상담실」로 상의할수 있습니다.또한,알선·조정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0120-107-808

휴대폰, 차량전화, PHS, 위성전화는 03-3255-1306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일·경축일은 휴식일입니다.)

가입내용확인사항(의향확인사항)

본 확인사항은 만일의 사고발생시에 안심하여 보험을 이용할수 있게끔, 가입하는 보험상품이 고객의 기대에 맞는 내용인가, 또는 신청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입했는지등을 확인하기 위한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음의 각항 질문사항에 대해 재차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확인할때 의문점이 있으면 4페이지에 기재하여있는 문의처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1. 보험상품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고객의 기대에 맞는 내용인가를 이 팜플렛 (중요사항설명서를 포함함) 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가입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금의 지급 사유 (주요계약, 특약을 포함합니다.), 지급하는 보험금

보험금액 (계약금액)

보험기간 (보험의 계약기간)

보험료

2. 가입의뢰서의 기입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기입 누락, 기입 실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의뢰서를 정정해야 하므로 인수보험회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의뢰서의 「기타 보험계약 등」 란은 바르게 고지하셨습니까?

「보상기간중에 다음의 운동등을 한 경우에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운동등을하는 동안에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금이 지불안될수가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혹은 인수보험회사로 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악등반(핏켈, 아이젠, 자일, 해머등의 등산용구를 사용하는것)

·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 스카이다이빙,행글라이더탑승, 초경량동력기 (모터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등) 탑승, 자이로플레인탑승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

· 다음의 승용기구에 의한 경기·경쟁·홍행 (어느운동도 연습을 포함함), 또는 시운전

자동차, 모터자전거, 고가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스노모빌등 기타 이와 유사한 승용기구

· 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정하고 운행하는 항공기이외의 항공기조정 (단지, 업무상의 항공기조종은 제외함.)

3. 중요사항설명서 (계약개요%주의환기정보) 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특히, 「주의환기정보설명서」에는 「주요면책사유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주요한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 「고지의무·통지의무 등」가 기재되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금의 지불대상이 된 사고 예〉

- 세탁기의 급수 호스가 빠져서 누수되어, 옆집 등이 피해를 입음 (677만엔 지불)
- 부엌에서 조리중에 냄비의 기름이 인화되어, 천정 등이 화재 (105만엔 지불)
- 자전거로 주행중에 사람과 접촉하여, 부상을 입힘 (22만엔 지불)